



제432회 국회(임시회)
제1차 국토교통위원회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《 목줄 등 안전기준을 동물보호법령과 동일하게 조정 》
■ 맹성규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4425호)

2026. 2.

국 토 교 통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곽현준

목 차

I . 맹성규의원 대표발의(제2214425호)	1
1. 제안경위	1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3. 검토의견	2
가. 반려견의 목줄 등 안전기준을 동물보호법령과 동일하게 조정 (안 제49조 및 제56조)	2

I. 맹성규의원 대표발의(제2214425호)

1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맹성규의원 등 10인

나. 발 의 일 : 2025. 11. 20.

다. 회 부 일 : 2025. 11. 21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도시공원에서의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애완견 등 목줄 미착용의 경우 도시공원 입장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, 동물보호법령에서는 3개월 미만의 반려동물은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며 등록대상동물을 동반·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두 법률 간 목줄 미착용과 관련된 기준이 달라 단속 등에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반려동물과 함께 도시공원 이용시 편의를 증진시키며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애완견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안전기준을 동물보호법령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두 법률 간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49조 및 제56조).

3. 검토의견

가. 반려견의 목줄 등 안전기준을 동물보호법령과 동일하게 조정 (안 제49조 및 제56조)

현행	개정안
제49조(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) ① (생략) ② 누구든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1. (생략) 2. <u>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</u>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	제49조(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「 <u>동물보호법</u> 」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<u>같은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</u> ----- -----
제56조(과태료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 ②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·징수한다.	제56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4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<u>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u> ③ ----- -----제2항제1호----- ----- -----.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부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법¹⁾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,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.

반면, 「동물보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로서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‘등록대상동물’로 규정하고²⁾,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며,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³⁾.

1)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

제49조(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) ② 누구든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2.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

제56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2) 「동물보호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8. “등록대상동물”이란 동물의 보호, 유실·유기(遺棄) 방지, 질병의 관리,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.

「동물보호법 시행령」

제4조(등록대상동물의 범위) 법 제2조제8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(月齡)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.

1. 「주택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
2.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(伴侶) 목적으로 기르는 개

3) 「동물보호법」

제16조(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)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

제101조(과태료)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4.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

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

제11조(안전조치)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

이렇듯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, 현행법과 「동물보호법」은 모두 반려견의 목줄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도 세부기준이나 위반 시 과태료 수준 등에 차이가 있어 단속 등에 혼란이 있을 수 있음.

【 현행법과 동물보호법령의 안전기준 및 과태료 수준 비교 】

	현행법	「동물보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·시행규칙
적용 장소	지방자치단체의 <u>조례로 정하는</u> <u>도시공원에 입장할 때</u>	등록대상동물(반려견)을 <u>동반하고 외출할 때</u>
안전 기준	동반한 반려견을 <u>통제할 수</u> <u>있는 줄(목줄) 착용</u>	1.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(등록대상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)를 사용. 다만,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,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음. 2. 공용공간 등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의 이동을 제한
과태료 수준	<u>10만원 이하</u> 의 과태료	<u>50만원 이하</u> 의 과태료

1.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(등록대상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)를 사용할 것. 다만,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,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.
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의 이동을 제한할 것
 - 가.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
 - 나.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
 - 다.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

이에 개정안은 두 법률의 안전기준 및 과태료 수준을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해 동물보호 관련 일반법적 성격⁴⁾을 지닌 「동물보호법」으로 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으로, 도시공원에 입장할 때 「동물보호법」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, 위반 시 과태료를 5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기준을 통일하여 현장의 혼선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.

다만, 개정안은 제49조제2항⁵⁾을 개정하여 ‘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’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, 「동물보호법」은 장소와 무관하게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만큼,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‘전체 도시공원’을 대상으로 하는 제49조제1항⁶⁾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.

4) 「동물보호법」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,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,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5)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

제49조(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) ② 누구든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
2.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

6)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

제49조(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)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
2.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
3.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
4.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(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)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
5.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농산물의 가공·유통·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
6.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
한편, 현행법 제56조제3항7)은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, ‘도시공원 입장 시 반려견의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행위’(제49조제2항제2호)의 경우 현행법 시행령 제51조 및 [별표 4]8)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함.

개정안 부칙은 이 법의 시행일을 ‘공포한 날’로 정하고 있는데, 안 제56조제2항은 ‘제4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’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‘10만원 이하’에서 ‘50만원 이하’로 상향하고 있으므로, 과태료 상한액의 변경에 맞춰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수정하기 위해 시행일을 ‘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’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.

7)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

제56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·징수한다.

8)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51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①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
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4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51조제1항 관련)

위반행위	해당법조문	과태료 금액
1.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입장료를 징수한 경우	법 제56조제1항	800만원
2.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	법 제56조제2항	10만원
3.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	법 제56조제2항	5만원
4.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	법 제56조제2항	5만원
4의2.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	법 제56조제2항	7만원
5. 법 제4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	법 제56조제2항	7만원
6. 법 제4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	법 제56조제2항	5만원

【 수정의견(안) 】

현행법	개정안	수정의견(안)
제49조(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)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	제49조(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) ① (현행과 같음)	제49조(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5. (생략)		1. ~ 5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	6. 「동물보호법」 제2조 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 동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
6.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		7. (현행 제6호와 같음)
② 누구든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</u>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② 누구든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<u>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</u>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1. <u>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</u>	1. (현행과 같음)	<삭제>
2.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	2. 「동물보호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---	<삭제>

현행법	개정안	수정의견(안)
제56조(과태료) ① (생략) <u><신 설></u> ②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제56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4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③ ----- -----제2항제1호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제56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4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③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, 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과 행정 혼란 방지를 위해 반려견 안전조치 및 과태료를 「동물보호법」에 통일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면서, 「동물보호법」은 외출 시 모든 장소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적용장소 통일을 위해 조문체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.

문 의 처

02)6788-5581